

사설

건천노선안 지지 이유

경주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경주도심통과의 결사반대입장을 여러차례 지상을 통해 천명해 왔다.

그 이유는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이며 세계문화유산인 경주를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역사관과 세계관이 뒤흔어진 일부 정치인·경제인들의 이기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천년이상 우리 조상의 얼이 숨쉬고 있는 옛도시의 찬란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서원에서도.

이제 경주고속철도의 노선문제가 정부 부처간의 갈등·대립으로 비화되었다. 옳고 그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발을 지상 목표로 하는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이른바 '형산강노선'을 아직도 고집한다.

반면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건천-화천을 잇는 경주와곡을 통과하는 안이다. 경주일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정된 뒤 관련자료를 근거로 경주 옛도시를 복원하고 건천지역에 신경주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경주 도심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신도시 이주우선권을 주어 민원을 해소하면서 죽어가는 경주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중적 차원에서 천년 옛도시 경주를 지키고 복원하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도심통과노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주노선백지화를 주장해 왔지만, 이제 문화체육부의 건천-화천통과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경주는 우리민족의 문화재의 산실이고, 그 자체가 박물관이므로 개발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의견보다

는 문화재관리부처인 문화체육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동안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는다. 물론 문화재보호의 주무관청으로서 문화재 파괴를 막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더이상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문체부가 이번 경주고속철도 도심통과에 반대하면서 건천우회통과안을 정략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구태의연했던 군사문화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역사 바로세우기'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본다.

둘째,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용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문화국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때이다. 그동안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온 '고속철도 경주 통과노선 백지화추진위원회'도 문체부의 건천노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일은 고속철도 경주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경주학 전공자사수 범시민단체협의회'가 기존의 건교부안 지지입장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현 정권은 이 점을 깊이 새겨서, 더이상의 극분분열이 없기를 바란다.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체부안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와 발표도 있었다. 건설비용과 경주경제의 활성화를 검토해도 쉽게 결론이 나온다. 대동령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민족의 얼과 아름다운 삶의 역사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문체부의 건천통과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의 심판은 냉엄하다는 점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열린마당 사찰종토세

경내지 범위 놓고 지자체와 해석 대립 부당과세면 6월 25일까지 이의 신청

현황과 대응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이후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가 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찰의 경내지정의와 사찰토지의 비과세 범위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는 데 있다. 종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경내지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종토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1989년 도입된 조세다. 그러나 종토세신설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않게 사찰소유토지에 조세를 부과해 불교계가 해결

해야 할 숙원사업이 되었던 것이다. 사찰에 부과되는 토지관련 세금은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조과소유부담금으로 조계종의 경우 93년~95년까지 3년간 총 46억 5천2백여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종토세부과는 309개 사찰 8억6천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납부액은 14.39%에 불과해 사찰토지에 대한 종토세부과의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납액의 58.80%가 불복신청을 하고 있으나 불복절차없이 미납한 21.95%(1억8천8백여만원)는 종토세규정 개정과는 관계없이 납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납 종토세는 납기후 세액의 가산금5/100, 그후 매 1개월마다 12/100씩 6개월까지 증가산되고 토지의 압류 및 공매처리가 된다. 따라서 종토세가 부담 과세된 경우 먼저 불복절차를 밟고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토록 해야 한다.

각 사찰은 6월1일부터 15일까지 과세공람기간동안 부과된 사찰토지 과세금성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6월16일~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 결정일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재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하게 과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식행사용 토지·사찰 풍치지구도 포함

경내지 범위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194조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항으로 비과세대상의 토지가운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를 추가했다. 따라서 그동안 경내지 범위규정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경내지를 의미 ▲합배도로 사용되는 토지-종교적신앙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불교적형상과 스님이 수행하는 토굴이나 암굴을 참배하기 위한 진입로 통로 도로 및 이의 유지에 필요한 부속토지를 의미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 이 지상물로 되어 있는 일획의 토

지-사찰건조물이 지상에 있는 토지로 등기단위인 한 개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 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필지들로 연결된 하나의 구획을 의미 ▲합배도로 사용되는 토지-종교적신앙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불교적형상과 스님이 수행하는 토굴이나 암굴을 참배하기 위한 진입로 통로 도로 및 이의 유지에 필요한 부속토지를 의미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불공용토지는 불전에 공양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한 경작지, 과수원 등을 말하며 수도용토지는 스님의 토굴이나 암굴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경내건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전통사찰은 1987년 이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국 847개(조계종 701개)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법인소유 조림지일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본 법인소유의 조림지에 유실수를 심어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간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확한 농산물을 복지사업에 직접 공급하는 이 일야에 대해 종토세가 부과되는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없고,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일 때는 종교법인과 별개이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이다.

주지 개인명의 소유지

사찰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법건축물로서 적법하게 준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사찰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속토지소유가 사찰주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종토세 비과세여부는.

-종교단체가 사찰주지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준공검사미필인 경우라도 관계없이 사실상 사찰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다.

종교용 토지 1년내 건축

종합토지세 적용에 있어 법인이 종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지 1년 이내에 건축을 하게 될 때 비과세대상이 되는가.

-비과세 된다. 그것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중일때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말사소유 임야일때는

조계종 전통사찰의 말사다. 인접한 임야가 사찰림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토세가 부과됐다.

현의·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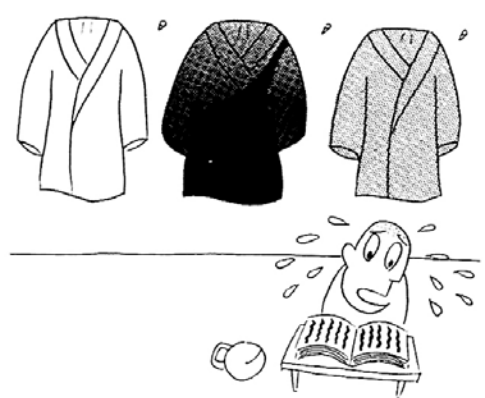
-사찰림은 산림법상 정의를 불투명해 해석의 차이가 많아 주의해야한다. 본사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말사와 인접해 있지만 본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하여 과세가 된것 같다. 또한 과세관청은 사찰림을 사찰의 존엄과 풍치를 위한 임야로 보아 사찰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말사와 인접해 있으므로 사찰림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를 주장해야 한다.

등기부상 압류상태 토지

전통사찰로서 사찰소유토지에 대해 종토세, 토초세가 과세되었으나 체납했다. 지난해 등기부상 압류가 되었고 이후 공매절차에 들어가 낙찰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위 사찰의 경우 사찰에 근접하여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한 토지로 볼 수 있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3조의 경내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찰소유토지의 조세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된 경우 행정소송과 별도로 미납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순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현대만평



승복색갈로 덕(德)을 알수 있다구요?

목어

"나는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힘든 일도 이겨내겠습니다. 나는 소질과 재능을 갈고 닦으며 밝은 꿈을 키우겠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 어린이날을 맞아 제정한 '서울어린이다짐'이다. 서울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지난 5일 이 다짐을 낭독하며 '이렇게 크겠습니다'를

마을속으로 서약했을 것이다. 이 땅의 새싹들이 모두 이렇게만 자라준다면 우리의 가정은 물론 사회도 국가도 장래걱정이 필요 없겠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린이 다짐'을 다짐해도 그 성장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다짐은 한낱 구호

G-7 성취의 주인공들

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어른 공경과 예절은 하루 아침에 몸에 배거나 익을 수 없다. 대가족제를 깨리는 오늘의 핵가족 상황에서, 더구나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과연 어른공경을 배울 수 있을까. 아무리 재능을 갈고 꿈을 키우고 싶어도 과외에 지치고 입시에 지치면 꿈은 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저질판화·비디오, 학원폭력, 결손가정 등 각종 유희환경에 무방비로 방치해두고 있는 않은가. 아니

새싹을 위한 부처님말씀

최선을 다하라

지나간 일에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방경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에 연연하랴 할 것만을 따라 바는 지체로 최선을 다할 뿐 땀생각하지 않는다. (2승아람경)

보명사 주지 반상원 TEL. (02)855-2834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부산 봉축연합대법회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연합대법회를 5월 19일 오후 2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봉행합니다.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불자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1996년 5월 19일(음4.3) 오후2시 봉축법요식
- 장소 : 부산사직실내체육관

식 전 행사

12:00 ~ 14:00 관불의식
 13:00 ~ 13:30 사물놀이 및 경품추첨 (태극어행권의 70명)

식 후 행사

13:30 ~ 14:00 범음
 15:30 ~ 16:00 초전법륜시연
 16:00 ~ 17:30 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우리가라 축제하마당
 지휘 : 배양현 소프라노 : 민상순 교수
 초창가수 : 심진스님, 칠감산의 주병선의 다수 출연

장엄물차량 제등행렬

18:00 ~ 21:00
 코스 : 행사장(사직실내체육관) ~ 연산로타리 ~ 양정R ~ 서면R ~ 부산역 ~ 시청 ~ 충무동 ~ 구덕운동장 (회향지점)

봉축 연회발사 (불꽃놀이)

21:30 중구 영주동 대청공원

문의전화 ☎(051)867-0501 FAX 867-0504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대 회 장 백 성 오 수석부대회장 변 춘 광
 준비위원장 허 도 봉 봉행위원장 류 진 수

